

서울서부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13가단29380 물품대금
원 고 A
피 고 B
변 론 종 결 2013. 12. 20.
판 결 선 고 2014. 1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4,6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6. 5.부터 2014. 1. 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4,6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**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. 1.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,200,000원 상당의 **를 판매하였다.

나.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,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. 5. 22. 및 2004. 11. 9.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·교부하였다.

다.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. 8. 2. 700,000원, 2013. 8. 5. 300,000원, 일자불상경 550,000원 합계 1,550,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.

라. 한편, 피고는 2008. 7. 17. 서울중앙지방법원 ****개회*****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,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의 주소와 채권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 24,650,000원(= 물품대금 26,200,000원 - 기지급한 금액 합계 1,550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보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. 6. 5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. 1. 6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

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피고는,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는 사정이 있어서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(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2조),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(동법 제625조 제2항 제1호), 피고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이상, 그 책임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있고, 누락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고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)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윤중